

##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6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건국 종합건설 (박형기)	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,807-2호 (별내동,별내노블 레스)	건축공사업 (10-3016)	등록말소 (2023.6.20.)	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업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 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1조 위반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5호